

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  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임병운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4년 3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3월 6일

3. 제안이유

충북형 도시농부 참여자 범위 확대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충청북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조문의 통일성을 위해 조례의 대상을 명확히 함 (안 제1조)
- 현행 비농업인으로 규정된 참여자 범위를 유휴인력으로 개정하여 참여자 확대 도모 (안 제2조, 제3조)
- 인력지원 대상을 생산자단체까지 확대 (안 제7조)
- 재난피해 복구지원 참여자에 대한 특례 신설 (안 제9조의2)
- 도시농부의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12조)

## 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### 가. 발의배경

- 농촌지역 고령화 및 노동력 유출로 인해 농업 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 인력에 의존해 왔으나 도시지역의 유희인력을 농작업 인력으로 활용하는 중복형 도시농부 사업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
- 이러한 중복형 도시농부사업은 참여자 사이에서도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그간 20~75세 청년, 은퇴자, 주부 등 비농업 도시 유희인력을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을 해왔으나 최근 소규모 농업인들 사이에서도 도시농부 참여 요구가 있었음
- 또한, 농작업 인력 지원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수해로 많은 피해가 있었고 이를 피해 농가에 도시농부를 투입하여 재해 복구에 큰 효과를 거둔 바 있어 이를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음
- 그 외에 상위법(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)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범위에 비해 축소되어 지원되고 있는 점과 조문 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발견되었음
- 이에 상술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### 나.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

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이 중복형 도시농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있으므로, ‘중복형 도시농부’라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

- **안 제2조**는 기존 비농업인만을 도시농부로 참여하도록 한 현행 제도에서 도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‘비농업인’의 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‘비농업인’으로 명시된 부분을 ‘유휴인력’으로 함으로써 중복형 도시농부 참여자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됨
- **안 제3조**의 경우 제1항에서는 상술한 제2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, 제2항에서 ‘중복형 도시농부 참여자’에 대한 약칭을 해당 용어가 처음 나오는 현재 조항이 아닌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바로 잡은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짐
- **안 제7조**는 상위법인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서 지원하고 있는 범위와 동일하게 중복형 도시농부 인력지원 대상을 ‘생산자단체’까지 확대한 것으로 필요한 개정이라 할 수 있음
- **안 제9조**는 상술한 제3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인건비의 일부만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정하여, 필요에 따라 인건비를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짐
- **안 제9조의2**는 재난피해 복구지원 참여자에 대한 특례의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해 7월 수해 피해 농가에 도시농부를 투입하여 재해 복구에 큰 효과를 거둔 바 있어,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도시농부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
- **안 제12조**는 중복형 도시농부의 효율적 추진과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농부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

## 다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중복형 도시농부 참여자 범위 확대에 대한 도민의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, 상위법과 지원범위를 동일하게 하고 재난복구에 도시농부의 활용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
  - (타당성) 이에 따라 용어의 정의, 도지사의 책무 등에 명시된 사항을 정비하고 재난피해 복구지원 참여자에 대한 특례, 도시농부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사항을 봤을 때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  - (법적합성)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  - (종합의견)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도시농부 참여자와 수혜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농촌 일손 부족 해결과 도시민 일자리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중복형 도시농부 사업이 내·외부적으로 한 단계 진화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짐
-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도시농부 참여자 및 지원농가 등과 소통하며 다양한 요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중복형 도시농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